

<b>부당지원행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b>	소관부서	컴플라이언스파트
	시행일	2019. 11. 01.
	문서번호	CGV 컴플-CL-05-20191101

2019년 11월 01일 제정



# 활용 가이드

## I. 목적

CJ CG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 업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I. 활용 방법

1. 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내용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합니다.
2. CJ 그룹사\*와 거래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법무정보시스템 계약검토의뢰 시 계약서와 함께 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이엔엠, 씨제이대한통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씨제이파워캐스트, 씨제이푸드필,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예시: CJ 그룹사와 임대차계약체결 시 → 2 번 체크리스트(p.12)

3. 법무정보시스템에 CJ 그룹사와의 계약 검토 의뢰 시 법무정보시스템 상 내부거래 검토요청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점검 요령

1.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

- ‘○’로 체크한 경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 ‘X’로 체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시거나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 ‘△’로 체크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2.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해당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기타 체크리스트 내용,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컴플라이언스파트(cgv.cp@cj.net)로 문의 바랍니다.

## 목차

I.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4
1. 의의-----	4
2. 부당지원행위 규제 이유-----	4
3. 용어 설명-----	5
4. 부당지원행위 유형별 설명 및 예시-----	6
II.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9
1. 의의-----	9
2. 금지 행위-----	9
3. 예외 사항-----	10
III. CJ 법무정보시스템 내부거래 검토요청서 안내-----	11
IV. 부당지원행위 체크리스트-----	12
1. 자금지원 관련 체크리스트-----	12
2. 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 관련 체크리스트-----	12
3. 인력 지원 관련 체크리스트-----	13
4.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 등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13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관련 체크리스트-----	14

#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 1. 의의

-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한다.
- (3) CJ CGV의 경우 영화상영업의 특성상 영화 제작·배급업을 하는 씨제이이엔엠 등과의 거래 등 계열회사 간의 거래가 발생하므로, 관련 거래시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2. 부당지원행위 규제 이유

- (1)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
-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집단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 초래
- IMF 외환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51>, 2019.09.19.)

## (2) 제재사항

- 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자세한 사항은 CP편람 p.52~53 참조

## 3. 용어 설명

### (1) 특수관계인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①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 ② 동일인관련자
-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2) 동일인관련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①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② 동일인의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다 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③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④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⑤ 동일인 및 ② 내지 ④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중 어느 하나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3) 다른회사

지원행위를 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로서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회사를 말한다.

※참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율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

\*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

### (4) 정상가격

- ① 어떠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당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8568 판결 참조).
- ② 정상가격 판단에 있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8568 판결 참조).

## 4. 부당지원행위 유형별 설명 및 예시

### (1) 부당한 자금 지원 행위

- ① 부당한 자금 지원 행위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

표 1의2 제10호 참조).

② 특히 CJ 그룹사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한다.

※ 부당한 자금 지원 행위 예시

-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할 때의 금리보다 저리로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2)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

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의2 제10호 참조).

② CJ 그룹사와 사무실 임대 등과 같은 계약 체결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 예시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3)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의2 제10호 참조).

※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

①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의2 제10호 참조).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 예시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 II.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1. 의의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참조).

\* ①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동일인관련자, ③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공정거래법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참조)

(2) CGV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므로,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 등을 할 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위 (1)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판단 및 관리가 필요하다.

### 2. 금지 행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참조)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

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3. 예외 사항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행위가 ① 기업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또는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참조).

### III. CJ 법무정보시스템 내부거래 검토요청서 안내

1. CJ 그룹사 간의 거래행위가 ① 기업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또는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가 되지 아니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CJ법무정보시스템에서는 CJ 계열사 간 ‘계약검토 의뢰’ 시 아래와 같은 ‘내부거래 검토요청서’를 필수적으로 체크하도록 하여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내부거래 검토요청서**

**계약형태**

수의계약  경쟁입찰

**거래구분**

신규계약  연장계약  추가계약  기타 : \_\_\_\_\_

**거래상대방 선정사유**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음**

상품의 기술적 특성(가격, 품질 등)상 전후방 연관 관계 있는 계열 회사간 거래로서, 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함

기획, 생산, 판매시 필수적인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음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가 전담하게 됨(사유: 사업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

오랜 기간 거래관계가 지속되어 이미 인적, 물적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현황, 대규모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신뢰성 등의 사유로 거래함

**보안성이 요구됨**

전사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과 관련된 (ex.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통신기반시설)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의 기밀정보, 고객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함

**긴급성이 요구됨**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함 (ex.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저장    닫기

2. 해당 ‘내부거래 검토요청서’의 각 항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모두 체크하는 등의 형식적인 검토는 지양하여야 하며, 검토 요청한 계약에 해당되는 사안에만 정확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 IV. 체크리스트

### 1. 자금지원 관련 체크리스트

NO	점검사항	O	X	△
1	<p>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지 않았는가</p> <p>※예시: 계열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임대료를 약정 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 등</p>			

### 2. 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 관련 체크리스트

NO	점검사항	O	X	△
1	<p>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지 않았는가</p> <p>※예시: 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광고매체에 정상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p>			

### 3. 인력 지원 관련 체크리스트

NO	점검사항	○	X	△
1	<p>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지 않았는가</p> <p>※예시: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p>			

### 4.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 등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NO	점검사항	○	X	△
1	<p>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는가</p> <p>※예시: 물품생산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아무 역할이 없는 다른 업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p>			
2	<p>다른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는가</p> <p>※예시: 물품생산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다른 업체를 거쳐서 거래하면서 해당 업체가 담당하는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p>			

##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관련 체크리스트

NO	점검사항	O	X	△
	<p>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체크합니다.</p> <p>*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100 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p>			
1	정상적인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지 않았는가			